

改正된 産業災害補償保險法令의

内容考察



勞動部 勞動保險局長

金濟憲

目次 / 1. 머리말 / 2. 産災保險法令의 主要 改正 内容 가. 事業範圍 擴大 나. 適用範圍 調整 1) 適用對象 擴大로 低賃金 勤勞者 保護 2) 建設業 無免許者가 施工하는 小規模 工事의 適用 除外 다. 零細業主 保險成立申告 便宜 圖謀 라. 保險成立 自進申告 誘導裝置 強化 마. 事業主 負擔 輕減 1) 延滯率 引下 2) 未加入狀態 給與徵收期間 短縮 바. 事業主 災害豫防 努力 促求 사. 保險財政의 安定화 圖謀 1) 保險料率 算定의 合理化 2) 概算保險料 控除率 引下 아. 保險事務組合 認可對象 擴大 자. 産災補償金 支給制度 改善 / 3. 맷은말

1. 머리말

産災保險은 勤勞者가 業務上 災害를 당한 때에 事業主가 勤勞基準法上 無過失債任 补償을 支拂 能力이 없어 支拂하지 못하거나 支拂能力이 있다 하더라도 一時的 資金 사정으로 补償이 遲延되는 境遇가 허다하여 災害勤勞者에 대한迅速, 公正한 补償制度가 절실히 要求 됨으로서 國家가 事業主集團을 對象으로 保險化한 制度이다.

同 制度 實施로 災害勤勞者는 补償金 受領을 政府로부터 保障받게 되어 生活이 安定되고 事業主는 大型事故 發生時 一時에 所要되는 過重한 补償費用을 多數業體가 共同으로 負擔하게 되므로 企業經營에 安定을 期할 수 있다 하겠다.

産災保險制度는 1963年 11月 3日 産業災害

補償保險法을 制定하여 1964年 7月 1日부터 實施된 以來 20余年 동안 20余 차례에 걸쳐 適用範圍의 擴大 补償水準의 向上등을 通하여 經濟成長과 社會發展에 맞도록 改善하여 왔으나, 아직도 零細業體에 從事하는 勤勞者 保護에 未洽한 點이 있어 이를 补完하고자 금번 産業災害 补償保險法과 同法 施行令을 改正하게 되었으며 이는 國政指標인 福祉社會建設을 구현하고자 하는 政府意志의 實現이라 하겠다.

改正된 主要 内容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2. 産災保險法令의 主要 改正 内容

가. 事業範圍 擴大

産災保險事業은 從前에 業務上 災害 勤勞者에

對한 迅速, 公正한 補償과 社會復歸를 促進시키는 保險施設의 設置, 運營에 限定하던 것을 勤勞者 福祉增進을 為한 事業과 災害豫防事業을 追加하여 既히 實施되고 있던 標學事業과 災害豫防 支援事業의 法的根據를 마련하였고 앞으로 經濟, 社會發展에 따른 災害勤勞者の 福祉慾求增大에 副應한 勤勞福祉事業을 擴充할 수 있게 되었다.

나. 適用範圍 調整

1) 適用對象 擴大로 零細業體 勤勞者 保護
產災保險 適用對象을 從前 常時 10人以上에서 5人以上 雇傭業體까지 擴大하되 災害勤勞者 保護와 事業主 負擔등을勘案하여 다음과 같이 危險業種부터 年次의으로 넓혔다.

事業의 種類	現行	改 正	擴大時期
一般事業	常時 10人 이상雇傭 業體	常時 5人 이상雇傭 業體	'86.9-'88.1 (業種別適用時期는 別表 1 참조)
伐木業	伐木材積 量 1千 700 m ³ 이 상	伐木材積 量 800 m ³ 이상	'88. 1. 1
有期事業 또는季節 事業(建 設業除外)	年間延人 員 2千 700人以 上	年間延人 員 1千 350人以 上	'88. 1. 1

適用擴大로 18,900個所의 零細業體에 從事하는 勤勞者 13萬2千名이 追加로 惠澤을 받게 될 것이다.

이번에 새로이 適用 擴大되는 零細業體의 年間 保險料 平均 負擔額은 約 14萬6千원 程度로 推定되며 零細業體의 負擔能力을勘案하여 이를 年 4期로 分割納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死亡事故가 發生한 境遇에 死亡者の 產災補償金 算定基準이 되는 平均賃金이 6,600원

(月額 198,000 원) 以下이더라도 6,600원까지 引上하여 遺族給與와 葬儀費로 支給되는 補償金合計額이 最低 719萬4千원이 되므로 適用對象擴大는 低賃金 災害勤勞者를 保護할 뿐만 아니라 零細業主에게도 死亡事故로 一時에 負擔되는 過重한 費用을 小額의 保險料로 대체하게 되어 企業運營에 安定을 圖謀할 수 있으므로 災害勤勞者와 零細業主 양자가 함께 惠澤을 받게 된다 할 것이다.

2) 建設業 無免許者가 施工하는 小規模 工事의 適用除外

建設業 無免許者가 施工하는 小規模 自己工事는 대부분 工事期間이 짧고 施工者的 行政能力不足 등으로 保險成立申告를 申告義務期間은勿論 工事竣工時까지도 履行하지 않아 竣工後 邊及하여 適用되는 境遇가 大부분이어서 民怨의 對象이 되고 있으므로 建設業法上 無免許者가 施工할 수 있는 住居用 建築物 661 m²以下 工事와 其他 建築物 495 m²以下 工事는 產災保險適用에서 除外시켜 民怨을 解消하였다.

다. 零細業主 保險成立申告 便宜 圖謀

保險成立申告 忽慢期間中 災害가 發生한 境遇補償金의 50%를 事業主가 別途 負擔하게 되어 있는 바 이번에 새로이 適用되는 零細業體들은 產災保險에 對한 認識不足 등으로 成立申告義務를 忽慢히 할 우려가 있어 이들의 便宜를 提供하고자 保險成立申告義務期間을 1986年 8月 27日부터 從前 7日 以內에서 14日 以內로 延長하였다.

라. 保險成立自進申告 誘導裝置 強化

事業主가 產災補償金의 50%를 別途 負擔하는 紿與徵收의 對象을 從前에는 保險成立申告法定期限 滿了日(14日) 다음날부터 申告한 날의 前日까지 發生한 災害에 對하여 支給되는 補償金(葬儀費 除外)으로 하였으나 1986年 8月 27日부터는 申告한 날에 發生한 災害의 補償金(葬儀費 除外)도 紿與徵收 對象에 包含시킴으로서 保險成立을 自進申告하도록 하는 誘引裝置

를 強化하였다.

마. 事業主 負擔輕減

1) 延滯率 引下

事業主에게 保險料 滯納日數에 따라 賦課되는 延滯金의 率이 從前에는 100원에 對하여 1日 7錢(年利 25.5%)으로서 銀行貸付 延滯利子率인 年利 19%보다 현저히 높아 民怨의 對象이 되었으므로 1986年 7月 1日부터는 100원에 對하여 1日 5錢(年利 18.3%)으로 引下하여 銀行貸付 延滯利子率과 均衡을 維持시켜 事業主의 負擔輕減을 民怨을 解消하였다.

2) 未加入狀態 紿與徵收期間 短縮

事業主가 保險關係成立申告를 慢怠한期間 중에 發生한 災害에 對하여 支給되는 補償金의 50%를 事業主에게 別途 負擔시키는 期間을 從前 3年에서 1986年 8月 27日以後부터는 1年으로 短縮하여 事業主의 負擔을 줄였다.

바. 事業主 災害豫防 努力 促求

企業別로 災害發生 程度에 따라 一般保險料率을 增減하는 個別實績料率의 增減幅을 從前 30%에서 40%로 擴大하고 그 對象도 從前의 100人以上 業體에서 50人以上으로 넓혀 事業主의 公平負擔을 圖謀함과 아울러 災害豫防에 對한 自主的 努力を 促進시켰다.

사. 保險財政의 安定化 圖謀

1) 保險料率 算定의 合理化

一般保險料率算定은 從前에는 純賦課方式인 災害率을 基礎로 算定하였으나 年金 支給額이 每年 增加 趨勢에 있어 '87年부터 修正賦課方式인 災害率과 年金額을勘案하여 算定하도록 함으로서 保險料率 算定에 合理化를 期하였다.

2) 概算保險料 控除率 引下

年間 概算保險料가 10萬원 以上으로서 分割納付할 수 있는 境遇에 이를 年度初 最初 納期에 全額 納付하는 境遇에 從前에는 10%를 控除해 주었으나 이는 銀行預金金利보다 7倍나

높아 1986年 7月 1日부터 5%로 引下하였다.

아. 保險事務組合 認可對象 擴大

保險事務組合 認可對象은 從前에 保險加入者를 構成員으로 하는 事業主 團體中 特別法에 依하여 設立된 團體인 中小企業 協同組合 商工會議所, 建設協會 등에 限定하였으나 1986年 7月 1日부터는 勞動部長官의 許可로 設立된 事業主 團體도 追加하여 이번에 새로이 適用 擴大되는 零細企業體가 保險事務組合 活用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자. 產災補償金 支給制度 改善

事業主가 保險給與와 同一한 事由로 民事損害賠償金을 受給權者에게 미리 支給한 때에 民事賠償金이 保險給與를 替當 支給한 것으로 간주되는 境遇에 限하여 保險給與를 事業主에게 支給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保險原理에 符合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同一事由라 함은 保險給與와 民事賠償의 趣旨, 目的이 같은 것을 말하며 民事損害 項目과 趣旨가 같은 產災保險給與는 다음과 같다.

民事賠償損害項目	民事損害項目과趣旨 가같은產災保險給與
逸失利益	休業給與 傷病補償年金 障害給與 遺族給與
療養費	療養給與
葬祭費用	葬儀費

3. 맷는말

產災保險의 適用對象을 9人以下 5人以上 零細業體까지 擴大하여 今年부터 實施하게 됨으로써,

零細業體에 從事하는 災害勤勞者는 業主가 資產이 없는 境遇에도 補償金을 支給받게 되고 零細業主는 補償費用 負擔으로 因한 經營不實을 防止할 수 있게 된 것은 때늦은 感은 있으나 매

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에 새로이 적용되는 零細業主는 이러한
產災保險制度의 趣旨를 십분 理解하여 保險成
立을 自進申告함으로서 申告義務怠慢으로 因한
損害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겠으며 勤勞者들도

自身이 從事하고 있는 業體가 產災保險에 加入
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事業主에게 加入하도록
積極 권장하거나 勞動部에 通報하여 法의 適用
을 받는 모든 業體가 빠짐없이 加入되도록 함
께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別表1]

一般事業의 業種別 適用擴大 時期

— '86. 9. 1부터 適用이 擴大되는 事業(14 個 業種)

- | | |
|-----------------|---------------------|
| • 베니아판 製造業 | • 製材業 |
| • 펄프 및 紙類製造業 | • 콘크리트製品 製造業 |
| • 시멘트原料採掘 및 製造業 | • 非金屬礦物 및 石材品製造業 |
| • 金屬材料品 製造業 | • 金屬製品 製造業 또는 金屬加工業 |
| • 鍍金業 | • 水上運輸業 |
| • 貨物自動車 運輸業 | • 貨物取扱業 |
| • 港灣荷役業 | • 重機管理事業 |

— '87. 1. 1부터 適用이 擴大되는 事業(20 個 業種)

- | | |
|----------------------|------------------|
| • 木材品 製造業 | • 機械器具 製造業 |
| • 船舶建造 및 修理業 | • 食料品 製造業 |
| • 印刷 또는 製本業 | • 烫業 또는 土石製品 製造業 |
| • 陶機器 製造業 | • 유리 製造業 |
| • 시멘트 製造業 | • 金屬 製鍊業 |
| • 計量器, 光學機械 時計等의 製造業 | • 기타 精密機械器具 製造業 |
| • 木材樂器 製造業 | • 電氣機械器具 製造業 |
| • 輸送用 機械器具 製造業 | • 기타 製造業 |
| • 自動車 旅客運輸業 | • 小型自動車 運輸業 |
| • 航空運輸業 | • 倉庫業 |

— '88. 1. 1부터 適用이 擴大되는 事業(16 個 業種)

- | | |
|-----------------|------------------|
| • 纖維 또는 纖維製品製造業 | • 輕印刷業 |
| • 新聞業 또는 出版業 | • 貨幣等 製造業 |
| • 電子製品 製造業 | • 手製品 製造業 |
| • 電氣業 | • 가스業 |
| • 水道業 | • 鐵道軌道 및 索道運輸業 |
| • 通信業 | • 農水產物委託販賣業 |
| • 運輸關聯서비스業 | • 高層建物 等의 綜合管理事業 |
| • 衛生 및 類似서비스業 | • 其他의 各種事業 |